

2022학년도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계획

원종고등학교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·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- 담당부서 : 행정실, 학생안전부 공동 관할
- 책임관 : 교감
- 운영 담당자 : 행정 계장, 학생안전부장, 학생안전부 업무담당교사
-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(복수 가능)

장소	주간	야간	비고
교무실	교감 (032-222-5816) 학생안전부장 (032-222-5847)	당직실 032-222-5900	※ 모니터링은 실시간으로 하되 해당 담당자가 수시 점검

3. 설치·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시설물명	위치	카메라 대수	성능	촬영 범위
원종고등학교	정문	1	200만 화소	진입로, 본관 전면, 후면. 분리수거장, 체육관, 자전거 거치대, 건물 후미진 곳
	후문	1		
	먼마루 정자 근처	1		
	본관 건물 앞 진입로	1		
	본관 중앙현관 내 출입구	1		
	본관 중앙현관 외 출입구	1		
	본관 건물 동 옆	1		
	본관 건물 동 뒤	1		
	본관 동편 뒤	1		
	본관 서편 뒤	1		
	본관 창고(무용실) 옆	1		
	별관 건물 동 앞	1		
	본관 창고(구 매점) 뒤	1		
평가관리본부	1			
		총 14대		

4. 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 장소

- 안내판 규격 : 가로 52cm * 세로 55cm
- 부착 장소 : CCTV가 설치된 정문 앞
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정보의 주체는 CCTV 자료의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나 아래 각 호에 대하여서 학교장은 정보 열람 및 삭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.

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4. 그 외 불복 수단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준함
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-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 실시간 촬영
-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최근 30일 이내
-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의 방법 : 촬영 후 파일 형태로 저장되었다가 30일 이후 자동 삭제
-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CCTV 모니터링이 가능한 당직실
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
-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열람 재생되는 장소 : 교무실, 당직실(학생 및 학부모의 접근이 어려움)
- 영상정보 열람 가능한 사람 : 교장, 교감, 학생안전부장, 야간 당직기사 1명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 관제센터 연계 포함)

장소	주간	야간	비고
교무실	교감 032-222-5816 학생안전부장 032-222-5847	당직실 032-222-5900	※ 모니터링은 실시간으로 하되 해당 담당자가 수시 점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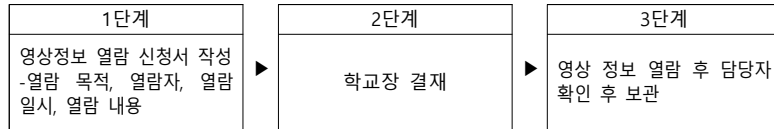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·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가. 영상 정보 열람, 재생 사유

영상 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. 하지만 아래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에서는 제 3자에게 열람을 제공할 수 있다.

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5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6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7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나. 영상정보 열람, 재생 방법

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본 운영 계획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

제 2조 (경과조치) 본 운영계획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본 가이드라인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.